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

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
[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]

2021. 11.

인천광역시 중구
http://www.icjg.go.kr

1. 사업명

- 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

2. 공개방법

-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(www.icjg.go.kr)
-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
3. 주민의견 수렴 개요

- 주민공람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,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절차 시행
- 공람기간 및 장소

공람기간	공람장소	비 고
2021.04.12~2020.05.12	• 중구청(농수산과) •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•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	-

- 주민설명회 개최

공고번호	공고일	신문공고		게 시	비고
		일간	지역		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-662호	2021.04.12	도민일보	일간경기	• 중구청 홈페이지 •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	-

일 시	장 소	비 고
2021년 04월 28일(수요일) 14시	• 용유동 주민자치센터	-
2021년 04월 28일(수요일) 17시	• 용유동 주민자치센터	-

4. 관련자료 및 문서사본

- 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- 신문 공람·공고(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-662호)
 - 공고일자 : 2021년 04월 12일
 - 공고신문 : 도민일보, 일간경기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-662호

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
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'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'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12일
인천광역시중구청장

1. 사업의 개요
 가. 사 업 명: 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
 나. 위 치: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103-22번지 일원(잠진도 일원)
 다. 사 업 규 모: 외곽시설(252m), 계류시설(120m), 그 밖의 어항시설 11,036㎡ 등
 라. 사 업 기 간: 착공 후 42개월 (2021년~2025년)
 마. 사업 시행자: 인천광역시중구청장

2. 공람장소 및 기간
 가. 공람기간: 2021. 4. 12. ~ 2021. 5. 12.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 나. 공람장소: 중구청(농수산과), 용유동 행정복지센터

3. 설명회 일시 및 장소
 가. 설명회 일시: 2021. 4. 28(수) 14:00
 나. 설명회 장소: 용유동 주민자치센터(중구 남북로 16)

4. 주민의견 제출
 가. 제출기한: 2021. 5. 21.까지(공람이 끝난 후 7일 이내) 공람장소에 제출
 나. 제출장소: 공람장소
 다. 제출방법: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
 라. 제출의견 내용: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,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,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.

5. 기 타
 가.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(www.icjc.go.kr)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http://www.eiass.go.kr)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농수산과(☎ 032-760-88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일간지(도민일보 2021년 4월 12일자 2면)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-662호

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 의 규정에 따라 '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'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12일
인천광역시중구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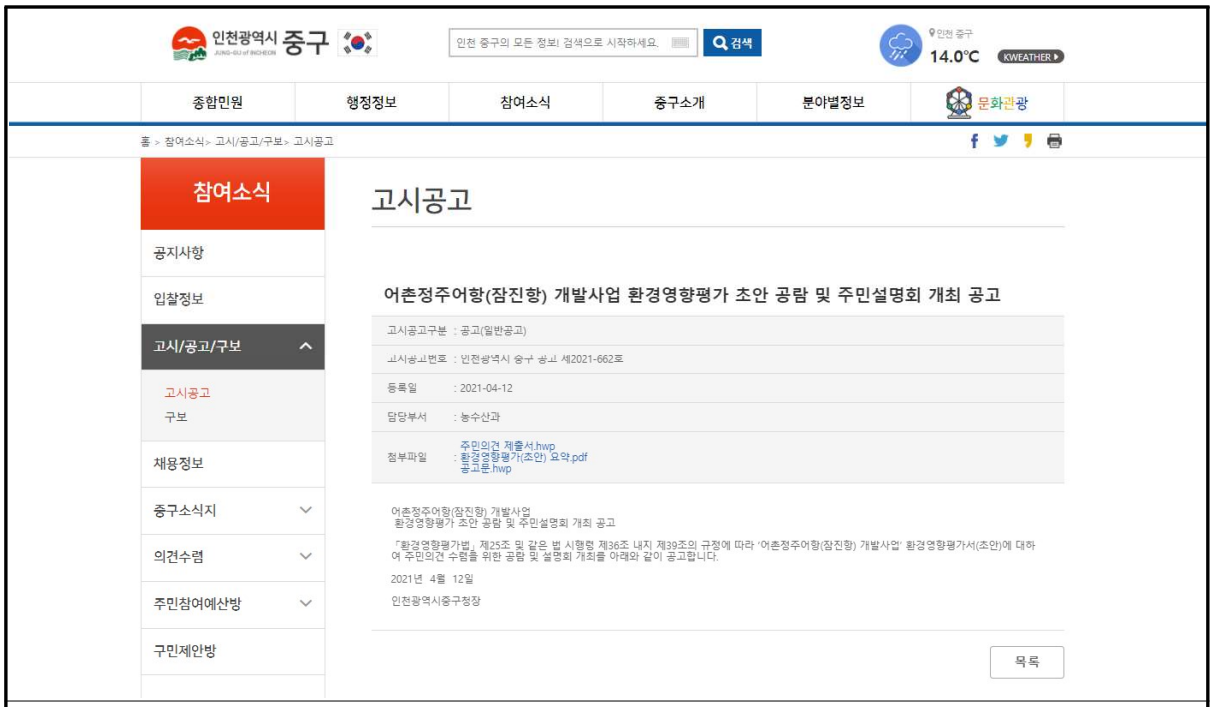
1. 사업의 개요
 가. 사 업 명 : 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
 나. 위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103-22번지 일원(잠진도 일원)
 다. 사 업 규 모 : 외곽시설(252m), 계류시설(120m), 그 밖의 어항시설 11,036㎡ 등
 라. 사 업 기 간 : 착공 후 42개월 (2021년~2025년)
 마. 사업 시행자 : 인천광역시중구청장
2. 공람장소 및 기간
 가. 공람기간 : 2021. 4. 12. ~ 2021. 5. 12.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 나. 공람장소 : 중구청(농수산과), 용유동 행정복지센터
3. 설명회 일시 및 장소
 가. 설명회 일시 : 2021. 4. 28(수) 14:00
 나. 설명회 장소 : 용유동 주민자치센터(중구 남북로 16)
4. 주민의견 제출
 가. 제출기한 : 2021. 5. 21.까지(공람이 끝난 후 7일 이내) 공람장소에 제출
 나. 제출장소 : 공람장소
 다.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
 라. 제출의견 내용 :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,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,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.
5. 기 타
 가.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(www.icjc.go.kr)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http://www.eiass.go.kr)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농수산과(☎ 032-760-88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방지(일간경기 2021년 4월 12일자 2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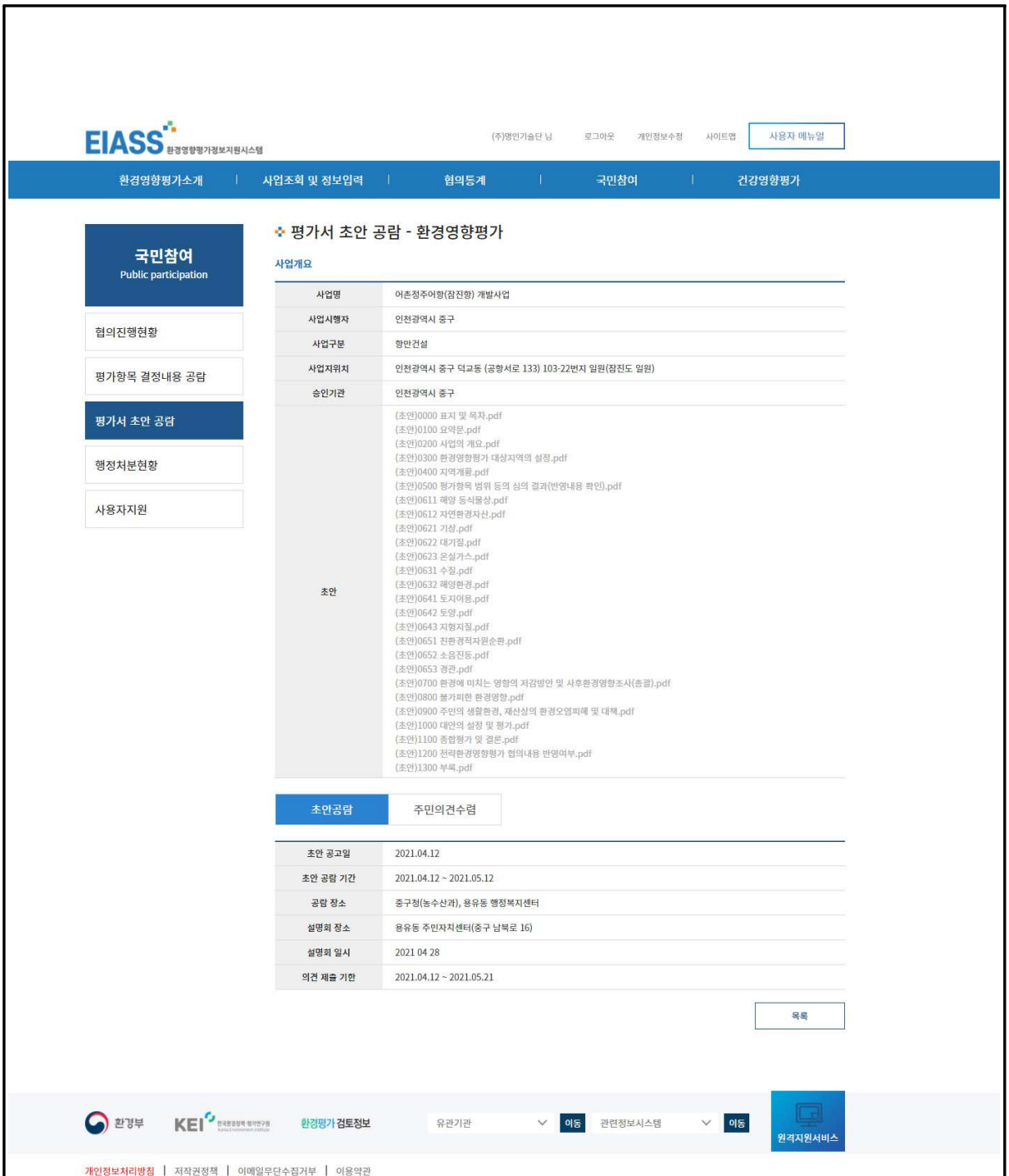
- 홈페이지

 -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(www.icjg.go.kr)

 -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http://www.eiass.go.kr)



인천광역시 중구청


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

5. 주민의견 수렴내용 및 반영여부

- 주민의견 : 있음
- 서면제출 : 없음
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://www.eiass.go.kr) : 없음
- 관계기관의견(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, 대기보전과, 하수과)

가. 주민의견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의견1	•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수립하여야 함.	•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.	반영
의견2	• 방파제 설치시 조류변화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함.	• 방파제 설치시 조류변화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.	반영
의견3	•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	• 오탁방지막 설치 및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였음.	반영

나. 관계행정기관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인천 광역시 (환경 기후 정책과)	Ⅰ. 총괄 • 본 사업은 어항을 미래지향적이고 사회·문화·복지시설을 구비한 어촌정주생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, 지역특성에 맞는 어항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, 항목별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.	• 항목별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.	-
	•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해당주민 및 이행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피해방지 및 민원대책을 신속히 강구·조치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.	•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해당주민 및 이행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피해방지 및 민원대책을 신속히 강구·조치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겠음.	-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인천 광역시 (환경 기후 정책과)	Ⅱ. 항목별 검토의견 1. 자연생태환경분야 • 사업지구 내 해양 동·식물상 현지조사를 한 차례만(2021. 1.)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, 계절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	• 사업지구 내 해양 동·식물 현지조사를 총 3회(2021년 1월, 2021년 5월, 2021년 7월) 계절별 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하였음	반영
	- 문헌조사 역시 2017.5, 12월 두차례 조사되었으며, 2017~2021년 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법종 보호종 발견시 추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함.	• 사업지구 주변 문헌『잠진도~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』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는 미공개이므로 확인이 불가능함	미반영
	- 사업지구 내 조류 등 법종 보호종 출현 시기를 조사하여 조류의 번식기(4~8월)를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고, 저소음 저진동 공법으로 진행하는 등의 보호대책 강구하여야 함	• 사업지구 내 조류 등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저소음 저진동 공법으로 진행하는 등의 보호대책 강구하였음	반영
	2. 대기환경분야 • 준설, 매립 등의 비산먼지 발생 공정은 간조시 시행하고, 산란·회유철을 피하는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종별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함	• 준설, 매립 등의 비산먼지 발생 공정은 간조시 시행할 계획이며, 공종별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.	반영
	3. 수환경분야 • 공사 중 발생오수는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에 따라 오수를 처리할 계획(평가서 251페이지)임인근 연안 해역의 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BOD 및 SS는 10㎎/L이하로 설정·제시하여야 함	• 공사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급적 기존 건물을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, 불가피하게 현장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을 BOD, SS를 각 10㎎/L이하로 처리하도록 제시함	반영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인천 광역시 (환경 기후 정책과)	4. 해양환경 분야 • 공사 시 토사유출 및 부유물질 발생·유입으로 해양에 대한 오염이 불가피하므로,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해역 전면에 오탁 방지막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, 공사 진행에 따라 사업대상지 주변 피해 예상지점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오염부하가 큰 공정시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책(공사방법 변경, 작업중단 등)을 통해 주변 해역 생태계에 대한 피해저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	• 공사시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인근해역 전면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,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통해 해양수질 및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을 모니터링하도록 계획함	반영
	• 공사시 부유사 확산에 따른 인근 해역의 어란 및 자치어에 대한 섭이활동 방해, 플랑크톤 현존량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어업권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바, 어업권 및 어족자원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,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	• 공사시 오탁방지막을 설치·운영할 계획이며,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지역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음.	반영
	•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육상전력공급 설치 구축 운영	• 잠진항 세력권내 어선은 1~10톤규모의 소형어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, 이러한 소형어선의 경우 양·하역시 엔진정지(전기사용을 위한 엔진가동 불필요)후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정박후 엔진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	미반영
	•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유류유출 사고 등 수질(해양)오염사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	• 공사시 및 운영시 유류유출 사고 등 수질(해양)오염방지 방안을 제시함	반영
	5. 기 타 •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할 경우 사업의 인·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, 사업내용,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(환경기후정책과장)에게 통보하여야 함.	•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됨으로, 사업의 인·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, 사업내용,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(환경기후정책과장)에게 통보하하겠음.	반영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인천 광역시 (대기 보전과)	1. 종합의견 • 악취분야 보완 후 재협의 - (p6, p220~221, p227) 준설 과정 등에서 악취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나 악취발생에 따른 예측 및 저감 방안이 제시 되지 않아 보완 필요 - 준설토 안정화 기간과 악취발생 예측, 저감 대책 등 마련 후 재협의	• 사업시행시 준설토사는 가적치 하지 않고 즉시 배후지 매립토로 유용할 계획이므로 준설토 적치(야적)으로 인한 악취 발생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	반영
	• 친환경항만구축(선박배기가스 저감 대책)을 위한 기반시설(육상전원공급설비 등) 구축 필요	• 잠진항 세력권내 어선은 1~10톤규모의 소형어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, 소형어선의 경우 양·하역시 엔진정지(전기사용을 위한 엔진가동 불필요)후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정박후 엔진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	미반영
	2. 대기분야 공사시 • 공사 시행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	• 공사 시행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겠음	반영
	• 공사 시행전 공사용 진·출입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공사 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(20km/h 이하) 하여야 하며, 공사장 둘레에 방진벽 및 방진망(가설방음판넬 상단 H=1.0m)을 전구간에 설치하고 주거지 인접지역은 높이 3.0m 이상의 방진벽 설치하고 야적물에 대하여는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함	• 공사 시행전 공사용 진·출입로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공사 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(20km/h 이하)하며, 야적물에 대하여는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. • 섬지역인 사업지구 특성 상 전구간에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는 대신 주거지1과 인접한 구간에 총 6m(가설방음판넬 5.0m+방진망 1.0m)의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할 예정임.	반영
	•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세륜·세차시설을 공사장 출구에 설치 사용하여야하며 반드시 운송차량 적재함은 밀폐식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함	•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세륜·세차시설을 공사장 출구에 설치할 계획이며, 운송차량 적재함은 밀폐식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음.	반영
	• 비포장도로의 경우 차량운행으로 인한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행하여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야 함. (최소 1일 2회 이상 살수해도 먼지가 발생할시 즉시 추가 살수 조치)	• 공사 시행전 공사용 진·출입로 도로를 우선 포장할 계획이며, 일부 비포장구간의 경우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할 계획임.	반영
	• 포장도로의 경우 공사장 내부 포장된 주도로 및 주변 인근도로에서 날림먼지의 발생억제에 따른 살수 후 재 비산되는 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한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분진진공흡입차량 등의 운영대책이 필요함.	• 공사차량 진·출입시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공사장 출구에 자동세륜·세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, 주도로 및 주변 인근도로에서 날림먼지의 재비산을 막기 위해 살수차량을 운행할 계획임.	반영
	• 공사장이 광범위하고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므로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	• 매립공사시 유용되는 준설토의 경우 다짐 후 즉시 복토 및 포장을 시행할 계획으로 별도의 야적장 운영계획은 수립하지 않음.	반영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인천 광역시 (대기 보전과)	• 미세먼지 발생공정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기(1등급)를 설치하고 주 출입구 등에서 측정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시설을 설치 미세먼지 농도 공개	• 섬지역인 사업지구 특성 상 북측에 위치한 주거지 외에는 정온시설이 위치하지 않으므로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는 계획하지 않았으며, 사후환경영향조사(분기 1회)를 통해 대기질 유지농도 준수 여부를 파악 후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.	반영
	• 공사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장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장비(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※)를 운영하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	• 노후 장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장비(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※)를 운영하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·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음.	반영
	• 공사장 내 폐목, 쓰레기 등을 드럼통에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	• 공사장 내 폐목, 쓰레기 등을 드럼통에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음.	반영
	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 단축·조정 하여야 함 - 시행시간 :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- 근 거 :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	• 사업지구 인근 측정망인 “운서(인천 중구 영종대로85(운서동) 영종도서관 옥상)” 자동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환경기준 초과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및 「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」발령기준에 의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, 공사장 내부 및 인근 진·출입도로 살수 실시할 계획임	반영
	3. 대기분야 운영시 • 해양수산부에서는 「항만법」에 따른 “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”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육상전원공급비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	-	-
	• 항만 대기오염물질의 주요원인인 선박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(AMP) 구축 등 적극적 해소방안 추진 필요	• 잠진항 세력권내 어선은 1~10톤규모의 소형어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, 소형어선의 경우 양·하역시 엔진정지(전기사용을 위한 엔진가동 불필요)후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정박후 엔진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	미반영
	• 본 평가서에 제시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이 향후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 할 때 관할 구청에 신청하는 『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』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내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대기분야 내용 통보	• 본 평가서에 제시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이 향후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 할 때 관할 구청에 신청하는 『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』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내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대기분야 내용 통보하겠음.	반영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인천 광역시 (대기 보전과)	4. 악취분야 공사시 • (p6, p220~221, p227) 준설시 악취 발생 및 준설 후 매립지 안정화 기간 중 악취발생에 따른 예측 및 저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며, 준설토 안정화 기간과 악취발생 예측, 저감 대책 등 마련 후 재협의 바랍니다.	• 준설토사는 가적치 하지 않고 즉시 배후지 매립토로 유용할 계획이므로 준설토 적치(야적)으로 인한 악취 발생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	반영
	• 공사시 철거 및 폐기물 운반시 냄새(악취)가 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여야 하며,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소각금지	•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,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겠음.	반영
인천 광역시 (하수과)	• 해당 사업구역은「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('20.09.)」상 자체처리구역으로 우·오수에 대한 사항 전반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·처리·유지관리 하여야 함.	• 우·오수 처리계획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·처리·유지관리 하겠음.	반영
	• 하수도시설의 계획·설계·시공시에는 「하수도설계기준('19.11.환경부)」,「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('21.03.환경부)」,「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('20.09.)」,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('20.10.)」등을 적용하고, 같은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.	• 하수도시설의 계획·설계·시공시에는 「하수도설계기준('19.11.환경부)」,「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('21.03.환경부)」,「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('20.09.)」,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('20.10.)」등을 적용하고, 같은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.	반영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중구청 (친환경 위생과)	•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대책을 강구.시행하여야 하고, 민원발생시에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관계주민과 협의 후 민원을 해소 하여야함.	•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, 민원발생시에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관계주민과 협의 후 민원을 해소하겠음.	반영
	•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,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인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.	•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,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인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하겠음.	반영
	• 사업예정지 주변으로 양식장 및 마을어업등이 분포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은 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.	• 추후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겠으며, 주변 해역의 이해관계자(지역주민)과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 등의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.	반영
	• 토사유출에 따른 오염방지를 위해 우기를 피하고, 특히 토목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야함.	• 본 사업은 산지 및 농경지 등에서 토공사가 수반되지 않고, 준설 및 매립공사가 실시되는 구간은 공유수면에 해당하여 강우시 육상부의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은 없음. • 준설, 매립 및 외곽시설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 등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오탁방지막 설치를 통하여 저감하도록 계획함	반영
	• 각종 장비의 운영에 따라 수시로 발생되는 폐유, 폐윤활유 등이 작업장 부근에 무단 투기되는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바, 무단투기 예방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 하여야함.	• 어항 이용시 수질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쓰레기 무단방치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함	반영
	•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이번에 통보되는 검토의견은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사업 승인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.	• 본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반영하였음.	반영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한강유역환경청	1. 총 괄 • 본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103-22번지 일원에 어촌정주어항(잠진항)을 개발하는 사업으로, 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	• 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.	반영
	• 본 개발사업에 따라 부유사 확산에 따른 해양수질오염, 침·퇴적 변화에 따른 조류 소통 불량, 연성조간대 훼손에 따른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본 평가서(초안)에는 이와 같은 중점평가요소에 대한 검토와 저감방안 제시가 미흡하므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본안에 반영하여야 함	• 본 개발사업에 따라 부유사 확산에 따른 해양수질오염, 침·퇴적 변화에 따른 조류 소통 불량, 연성조간대 훼손에 따른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 등의 중점평가요소에 대한 검토와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제시하였음.	반영
	• 본 개발사업에 따라 공사 시 해양환경영향 중 부유토사 확산과 운영 시 수산물 유통·판매시설 등에서의 오수방류 등에 의한 영향 저감을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오수처리시설 운용·관리계획 등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• 공사시 부유사 확산저감을 위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하여 제시하였음.	반영
	• 금회 제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이 매립·준설 및 항내와 인접한 조사지점에 집중되어 있어 개발에 따른 영향권과 비영향권간 환경영향을 비교·분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야 함 - 해양수질·퇴적물, 해양생태계(동·식물 플랑크톤, 어란 및 자치어, 저서 생태계 등)를 계절별로 동일정점 및 동일시기에 조사·분석 - 조사 시에는 대조구 1개를 포함한 5개의 조사정점 선정 후 표·저층조사를 통해 사업 전·후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	• 해양수질·퇴적물, 해양생태계 항목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은 계절별로 동일정점 및 동일시기에 조사·분석하도록 계획을 수립함.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은 직접영향권(실험구)과 간접영향권(대조구)를 대상으로 6개지점을 선정하였으며, 해양수질은 표·저층조사를 통해 사업 전·후의 영향을 비교하도록 계획함	반영

〈표 계속〉 **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**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한강유역환경청	2. 항목별 검토의견 가. 자연생태환경 분야 1) 동·식물상		
	• 해양 동·식물상에 대한 현지조사를 겨울철에 1회 실시하였으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봄철과 여름철에 추가로 조사를 이행하여야 함.	• 해양 동·식물상에 대한 현지조사 2회(봄철, 여름철)를 추가하여 제시함	
	- 경성조간대와 연성조간대를 구분하여 조사	• 현지조사 1차조사시 경정조간대 조사만 시행하였으나, 2차조사 및 3차 조사시 경성조간대와 연성조간대를 구분하여 조사하였음	반영
	- 경성조간대 저서생물 조사는 line transect 법에 의해 상·중·하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사결과로 제시	• 경성조간대 저서생물 조사는 line transect 법에 의해 상·중·하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사결과로 제시함	
	- 조하대 저서동물에 대한 조사 시 채집면적이 0.07~0.1㎡일 경우 3회 반복, 0.1㎡일 경우 2회 반복조사	• 조하대 저서동물에 대한 조사 시 채집면적 0.1㎡일 경우 2회 반복조사하였음	
	- 저서동물 출현종명을 국문으로도 제시(일반주민을 포함해 비전공자도 파악이 가능하도록)	• 저서동물 출현종명을 국문으로 제시함	
	• 금회 평가서(초안)에 인용한 참고문헌 이외에 국가 해양생태계 및 주변 개발사업 해양환경조사서*가 확인되어 참고문헌 인용의 적정성이 부족하므로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야 함 - 본안에서는 추가로 최신의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본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 * 2021년 인천경제자유구역 무의LK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, 2020년 잠진도~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일반해역이용협의서	• 사업지구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, 조사결과 현재 비공개 사업으로 확인되어 참고문헌 제시가 불가능함.	미반영
	• 해양생태계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이행한 결과에 따라 대상 해역의 해양생태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. -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 암반조간대 훼손, 조간대 저서생물의 피해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(매립 최소화 등) 수립·제시	•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해조류가 부착하여 서식하기에 적합한 큰 암반이 적고, 연성저질이 넓게 분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암반조간대가 위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,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	반영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한강유역환경청	• 사업부지 인근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가 필요하므로 해양생물 전문가의 참관 하에 보호종 현황(종조성, 서식환경, 서식밀도, 서식범위 등)을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• 해양생물전문가 참관하에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음	반영
	•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은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영향권(실험구)과 간접영향권(대조구)을 구분하여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	•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은 직접영향권(실험구)과 간접영향권(대조구)를 대상으로 5개지점을 선정함	반영
	•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점을 확대(해양수질, 해양퇴적물, 해양지형·지질, 해양생태계, 수산자원)하고 해안선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추가하여야 함	• 해양수질·퇴적물, 해양생태계 항목의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은 평가 초안시 4개 지점에서 본안시 5개 지점으로 추가하였으며, 해안선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추가함	반영
	나. 대기환경 분야 1) 온실가스 • 사업부지의 운영 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계획(LED 가로등,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수소·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)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	• 건축물 계획은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친환경 인증 자재를 사용하며, 조명기기는 LED 로 계획하여 에너지 절약 건축물로 설계할 계획임.	반영
	다. 수환경 분야 1) 수질 •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는 아래와 같이 보완·검토하여야 함 - 조사 결과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1회 이행한 결과로 제시하였으므로 여름철에 추가조사를 실시 - 해양수질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이하므로 재검토 - 해양저질은 중요지점인 준설예정지점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으므로 추가조사하고 인접지점도 조사지점으로 포함	•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현지조사를 1회(여름철) 추가하여 제시하였으며, 해양저질은 준설예정지점(St.5)을 추가하여 제시함	반영

〈표 계속〉 **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**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한강유역환경청	• 준설예정해역에 항내 암반조간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포함될 경우 암반 준설방식에 따른 영향 예측을 이행하여야 함	• 준설토의 토질별 입도분포는 자갈 및 모래가 80%, 실트 및 점토는 20%의 분포로 준설예정해역에 암반조간대는 위치하지 않음	반영
	• 운영 시 해양환경영향 중 오수처리수 방류에 의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금회 개발계획인 ’수산공급시설, 위판장, 수산물유통·판매시설 등‘에서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야 함 -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오수 방류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(오수처리시설 설치 등)을 수립·제시	• 사업지구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할 계획이며, 「하수도법」 시행규칙 [별표 3]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보다 강화된 BOD, SS 각 10㎎/L이하로 처리하도록 계획함 •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해양에서 이격된 육상부(수산물유통, 판매, 보관시설 부지내)에 설치하고 방류구 위치는 외곽시설 외부에 위치하도록 계획하여 항내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	반영
	• 공사 시 부유사 확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한다고 제시했으나 오탁방지막의 설치 및 관리, 모니터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검토·제시하여야 함 - 오탁방지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·제시하고 주요 공정시(외곽시설 설치, 준설 등) 월별 모니터링 계획을 별도 수립	• 오탁방지막의 설치 및 관리,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	반영
	•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은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영향권(실험구)과 간접영향권(대조구)을 구분하여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 - 해양수질, 퇴적물은 계절별로 동일정점 및 동일시기에 조사·분석 - 조사 시에는 대조구 1개를 포함한 5개의 조사정점 선정 후 표·저층 조사를 통해 사업 전과 호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	• 해양수질·퇴적물, 해양생태계 항목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은 계절별로 동일정점 및 동일시기에 조사·분석하도록 계획을 수립함.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은 직접영향권(실험구)과 간접영향권(대조구)를 대상으로 6개지점을 선정하였으며, 해양수질은 표·저층조사를 통해 사업 전·후의 영향을 비교하도록 계획함	반영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한강유역환경청	라. 해양환경 분야 1) 해양물리 • 조류 검증결과를 단순 시계열 그래프로만 제시하여 모델 재현기간 중 정확한 편차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야 함 - 각 정점별, 분조(4대분조)별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비교 및 검증하고 그 검증치(편차, 에러율)를 표로 제시	• 조류 검증결과는 각 정점별, 분조(4대분조)별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비교 및 검증하고 그 검증치(편차, 에러율)를 표로 제시함	반영
	• 해수유동모델은 퇴적물 이동, 부유사 확산, 해수교환율 실험에 중요하게 사용되나 상세한 정보제공이 없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야 함 - 경계조건 설정 시 바람응력을 기본적 외력으로 부여하고 연속부유사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·보정을 수행 - 실험수층을 5층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수직격자 간격을 제시 - 영향예측결과는 표층, 중층, 저층에 대해 대조기, 소조기, 최강창조시 및 최강낙조시를 기본으로 제시하고 유속변화도는 수치 및 백분율로 제시	• 바람응력 설정에 따른 해수유동실험을 수행함 • 평균부유사 농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함 • 5개 실험수층의 수직격자는 수심의 등간격으로 분할하여 설정함 • 수치모형실험결과는 표층, 중층, 저층 및 대조기, 소조기, 최강창조시, 최강낙조시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, 유속변화도를 수치 및 백분율로 제시하였음	반영
	• 침전·퇴적 실험은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야 함 - 침전·퇴적실험의 모델구축은 상기 해수유동실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확한 실험안으로 영향 예측을 실시 - 모델 검증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관측자료 등을 이용하여 검증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제시 - 점착성과 비점착성의 입력자료 중에서 모델링에 사용한 퇴적한계 전단응력, 침식한계 전단응력, 기준 침강속도 등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 - 입력자료는 단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례가 아닌 본 수치가 대상해역에 적합한 자료임에 대한 근거를 제시	• 침전·퇴적실험의 모델구축은 상기 해수유동실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함 • 평균부유사 농도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시함 • 퇴적한계 및 침식한계 전단응력, 침강속도 등의 적용근거를 제시하였음 • 퇴적물이동 실험의 입력자료는 기존의 연구자료에 따른 적용범위내에서의 입력값을 적용하고, 보정실험을 통한 적정값을 찾아서 적용함 • 모델결과의 부유사 농도는 침강속도 외에 퇴적한계 및 침식한계전단응력 등의 변수에 따라 변화하므로, 금회 제시하는 평균부유사농도의 검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, 입력자료는 대상해역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음.	반영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한강유역환경청	• 부유사 확산 실험의 부유사 검증은 관측부유사 농도와 모델치 시계열을 비교 검증하고 RMS 오차를 제시하여야 함 - 부유사 확산범위는 여름철 또는 겨울철을 포함하여 최대확산범위로 제시 - 부유사 농도에 대한 단면분포도를 각 조시(창/고/낙/저조)별, 최대 확산범위에 대하여 제시	• 부유사확산 실험은 사업영향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공간적인 부유사농도를 '0'으로 설정하고 수행함. • 또한, 모델에 입력되는 공사시 발생부유사와 대상해역의 공간부유사는 침강속도가 다르므로 비교 및 검증은 불가능함. • 동계 및 하계 검토를 수행하여 제시하였음. • 조시별(창조/낙조) 층별(5개층) 부유사 확산범위를 제시함	반영
	• 서방파제 건설로 인한 해안선의 변화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야 함 - 모델 경계조건과 입력자료를 재검검 - 실제 관측값을 활용하여 예측모델을 검증·보정 - 퇴적물이동 수치모형 실험을 장기간에 걸쳐 재수행	• 잠진항 인근 해안선은 암초로 형성된 해안으로 침식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으며, 그에 따라 해안선의 변화영향에 대한 모델링(해안선변화 수치모형실험) 검토는 어려움이 있음 • 퇴적물이동 실험은 계절별(여름, 겨울 및 봄가을)에 대한 계산을 별도로 수행하여 1년간의 장기 모델링을 실시하여 제시하였음	반영
	• 사후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 계획에 해안선 변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함	• 사업지구 주변 조간대는 대부분 암반 및 갯벌로 구성되어 있어 해안선변화 모니터링에 적절한 지역이 아닌 바, 일부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동방파제 동측지역을 사후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 계획에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지점으로 설정함	반영
	마. 생활환경 분야 1) 친환경적 자원순환 • 본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,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이 해안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발생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수집, 운반,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- 발생 폐기물을 부지 내에 보관해야 할 경우 해안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강우나 강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임시 보관소를 마련	•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(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 등)이 해안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발생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수집, 운반,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음. - 발생 폐기물을 부지 내에 보관해야 할 경우 해안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폐기물 임시 보관소를 마련할 계획임.	반영

구 분	의 견	반영내용	비 고
한강유역환경청	2) 위락·경관 • 사업부지의 개발에 따른 경관영향 평가를 위해 개발 후의 경관변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나 사업부지 경계만 제시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야 함 - 초안에 제시한 조망점 이외에 근경을 중심으로 추가 조망점을 선정 - 기존 호안의 준설·매립, 방파제와 선차장 등 호안 인공 구조물 및 관련 건축물 설치 등으로 인한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	• 사업부지의 개발에 따른 경관영향 평가를 위해 개발 후의 경관변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제시하였음 - 초안에 제시한 조망점 이외에 근경 1개소를 추가하여 조망점을 선정 - 기존 호안의 준설·매립, 방파제와 선차장 등 호안 인공 구조물 및 관련 건축물 설치 등으로 인한 경관영향이 예상되는 지점 3개소에 대한 경관영향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	반영
	3. 기타 •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에 본 검토의견과 관계행정기관, 주민의견 수렴결과의 반영여부를 요약제시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·제시하여야 함 -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	•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에 본 검토의견과 관계행정기관, 주민의견 수렴결과의 반영여부를 요약제시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·제시하였음. -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	반영
	•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, 가능한 한 정량화 하여야 함 - 특히,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(예측조건, 방법, 수치 등)은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	•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, 가능한 한 정량화 하였음. - 특히,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(예측조건, 방법, 수치 등)은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함.	반영
	•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,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여야 함	•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,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였음.	반영
	•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)에 따라 부록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는 등 충실히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. 끝.	•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)에 따라 부록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보고서 충실히 작성하였음.	반영